

리얼돌 규제 주장의 문제점들

이선옥 작가

1. 2019년 6월 대법원의 리얼돌 수입허가 판결 이후 보도: 리얼돌 규제 주장을 부각

- 영국에서는 아동 형상 리얼돌 적발되면 징역형 | 노컷뉴스
- '아동 리얼돌' 처벌 못하는 법.. "여성혐오적 소비 우려" | 머니투데이
- 국회입법조사처 '리얼돌' 규제 필요성 제기 | 미디어오늘
- 입법조사처 "'리얼돌' 여성혐오 범죄 우려.. 다양한 규제 필요" | 뉴시스
- [이슈 되감기] 리얼돌 기준 마련하려는 청와대.. 여전히 논란인 리얼돌 2019.09.12 | 아시아경제
- [KISTI의 과학향기] 리얼돌 논란, 정말 성범죄 증가에 영향 줄까? 2019.09.20 | 금강일보
- 청와대 "'아동·특정인물' 리얼돌 규제 적극 검토" 2019.09.06 | 경향신문
- 청와대 "아동형상 리얼돌 규제 방안 적극 검토할 것" 2019.09.06 | 세계일보
- 청와대 "특정 인물 형상 리얼돌, 엄정한 처벌 법적..." 2019.09.06 | 한국경제TV
- 靑 "리얼돌 판매사이트 주기적으로 점검" 2019.09.09 | KTV
- 靑 "특정인 형상 리얼돌, 엄정 처벌 검토" 2019.09.06 | YTN
- 靑 "당사자 동의 없는 '닭은꼴 리얼돌' 규제·처벌 검토" 2019.09.06 | 헤럴드경제
- 靑, '리얼돌 수입금지' 청원에 "현실 반영할 제도개선 약속" 2019.09.06 | 노컷뉴스
- "리얼돌, 여성 성상품화 없이 성적 욕구 해소하는 방법" 2019.09.03 | 시사저널
- "리얼돌, 음란물법 위반 아니라 개인의 존엄 해치는 것" 2019.09.03 | 시사저널
- 靑, 리얼돌금지 청원에 "대법판결은 전면허용 아냐.. 규제방안 검토" 2019.09.06 | 이데일리
- '리얼돌'과 性착취.. 그리고 '反포르노' 운동 2019.08.28 | 노컷뉴스
- [뉴수달] 나 닭은 '리얼돌'? 초상권·인간존엄 훼손이야!! 2019.08.30 | 한겨레
- 여성 인격 건드린 남성 성적 사생활.. 뜨거워진 '리얼돌' 2019.08.26 | 서울신문
- "시신 보는 기분".. 버려지고 절단된 '리얼돌' 사진 논란 2019.08.24 | 세계일보
- "얼굴복제, 125cm 귀여운 스타일".. 리얼돌 우려 현실화되나 2019.08.19 | 뉴스1
- '아동 리얼돌' 소지만 해도 최대 10년형.. 호주서 전면금지법 추진 2019.08.27 | 국민일보
- "리얼돌, 누군가에겐 가족입니다" 강남에 등장한 리얼돌 [헝스] 2019.08.09 | 파이

낸셜뉴스

- [자막뉴스] 여성 본뜬 '리얼돌'..어린이·청소년 모습까지 판매 2019.08.19 | YTN
- "끔찍한 범죄 현장 같아" 팔 다리 잘린 리얼돌 논란 2019.08.17 | 아시아경제
- 리얼돌, 더 리얼해야 금지된다? 2019.08.10 | 경향신문
- [형형색색] 리얼돌, 음란해서 문제인가 2019.08.09 | 한국일보
- 리얼돌 논란, 판매자들에게 물었다 2019.08.10 | 경향신문
- [뉴스AS] 여성들은 왜 '리얼돌' 판매에 분노하는 걸까요 | 한겨레
- [뉴수달] 나 닮은 '리얼돌'? 초상권·인간존엄 훼손이야!! | 한겨레
-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리얼돌' 수입허가 논쟁 “개인의 자유” VS “존엄성 훼손”
2019.07.31 | 한겨레
- 리얼돌 판매길 열어준 대법...'성기구' 24번 언급에 이유있다 | 중앙일보

**국회는 규제입법 발의를 했고, 여성가족부, 청와대는 규제하겠다고 발표.

2. 성적 행위와 표현에 대한 한국사회의 문화적, 제도적 변화 양상

1) 엄숙주의, 보수주의, 규제주의, 엄벌주의 강화

2015년부터 페미니즘 물결과 여성혐오 배격 운동의 대중화로 성적 행위와 표현 영역에서 보수주의와 엄벌주의가 강화되고 있다. 미투운동의 결과로 무고수사유예적용 매뉴얼과 대법판결로 비동의간음죄가 사실상 도입되었고, 혜화역 시위 등의 결과로 HTTPS 차단, P2P 업로더 처벌, 음란물 규제 강화,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 등이 이어졌다. 특히 여성에 대한 성폭력과 성범죄 영역이 급속하게 확대되고 처벌이 강화되는 특성을 보인다.

문화적으로는 여성혐오, 피해자 중심주의, 성상품화, 성적 대상화, 2차 가해, 성인지 감수성 등의 개념이 확산되고, 정부가 정책적으로 이를 수용하면서 성적 표현 영역에서 특히 여성을 대상으로 한 표현들은 보수주의와 엄숙주의로 바뀌고 있다. 대중문화는 제도적 규제가 도입되기 이전 소비자 운동의 형태로 페미니즘과 PC(political correctness)주의가 직접규제 수준의 영향을 끼치고 있다.

2) 국가 대 개인의 구도 대신 성별 대립 구도 등장

전통적으로 규제를 반대하고 자유와 권리에 민감하게 반응하던 좌파와 진보진영,

페미니스트들이 이 변화를 주도하는 특성을 보인다. 금지를 금지하고 더 많은 자유를 외쳤던 세력이 오히려 규제를 요구하고 엄벌주의에 찬성하고 있다. 주장의 기저에는 국가 대 개인이라는 구도 대신 정체성 정치에 기반한 성별대립구도가 깔려 있다. 강자/억압자/가해자(남성) 대 약자/피억압자/피해자(여성)라는 구도는, 권리를 제한하고 규제를 도입하려는 국가에 대한 경각심을 무너뜨리고, 약자의 보호와 권리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점점 국가에 권리침해의 권한을 부여하는 문제를 일으킨다.

3) 자유권적 기본권에 대한 침해, 위헌적인 제도와 문화의 확대

“여성을 혐오스럽게 묘사하는 창작의 자유는 위축되어야 한다.”, “성상품화와 성적 대상화는 여성혐오이다”, “여성에 대한 성범죄에는 유죄추정의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 “성희롱과 성차별의 입증책임은 신고를 당한 자에게 있다”, “성별에 기반한 폭력은 특수하게 취급해야 한다”, “가정폭력이 ‘예상’되는 현장에서 체포를 하지 않은 공권력은 처벌해야 한다”, “(위력간음죄 피고인이)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해도 대법에서 무죄로 판결나기 전까지는 유죄이다.”, “성범죄에 대한 유무죄의 판단에는 성인지감수성을 적용해야 한다.”

공적 매체에 기고되거나 국회의원이 발의한 입법안, 행정부의 장관이 국회에서 한 발언, 사법부의 판결문에 적시된 표현들이다. 지금 한국사회는 위헌적인 제도와 문화들이 당연시되는 분위기이다. 문화운동이 앞장서고 제도가 수용하는 형태로 증거주의, 입증책임의 원칙, 무죄추정의 원칙, 의심스러울 때에는 피고인의 이익으로와 같은 형사법의 대원칙들이 무력화되고, 자유권적 기본권들이 형해화되고 있다. 여성의 주체성을 외쳤던 페미니스트들은 여성을 보호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성적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는 주체로 묘사한다. 빅티م 페미니즘(victim feminism)은 여성운동의 강력한 무기로 사용되며, 극단의 사례들을 부각해 개인의 자유권을 축소하고 규제의 정당성을 옹호한다. 자유의 제한은 자유의 확대를 위해서만 허용된다는 오랜 원칙이 권리 논증 없이 왜곡되고 있다.

4) 남성에 대한 혐오문화 확산

제도적 평등이 자리 잡은 근대 법치국가에서 여성들의 권익을 위한 운동이 힘을 발휘하는 영역은 범죄와 문화이다. 특히 성범죄는 여성들의 피해 가운데 극단적 사례들이 존재하므로 규제와 처벌에 손쉽게 대중적 동의를 구할 수 있다. 성범죄의 특수한 부각은 남성 일반을 잠재적 가해자, 잠재적 성범죄자로 규정하는 오류를 범한다. 남성 성이라는 특질은 유해한 것으로 규정돼 욕구 자체가 혐오와 규제, 교정과 억압의 대상이 되며 이를 당연시한다. 이 결과 남성을 반문명적인 존재로 혐오하는 문화가 자리 잡았다. 남성의 욕구에 대해서는 어떠한 타협도 하지 않으려 하며, 남성의 욕구를

수용하는 것은 곧 남성지배의 강화라 비난한다. 남성의 성적 욕망은 방어하기 힘든 영역이 되었다.

젠더감수성, 성인지감수성, 성상품화, 성적 대상화, 피해자중심주의와 같은 개념은 문화적으로 여성운동에 정당성을 부여하고 있으나 사실상 명확하게 개념화할 수 없고, 권리로서 논증되지 않은 개념들이다. 그럼에도 이를 명문화된 처벌과 규제의 영역에 기준으로 적용하려는 데서 갈등과 진통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리얼돌에 대한 규제요구도 이 연장선에 있다.

3. 리얼돌 규제의 주요 논점들: 포르노 합법화 논쟁과 유사

1) 실제 인물과 아동을 모방한 리얼돌은 인격권을 침해한다?

실제 인물을 모방했을 경우 현행법을 통해 민형사상 처벌 가능하다. 여성 연예인을 대상으로 한 성적 표현물이 해당 여성의 신고로 처벌받은 사례들이 있다. 남성 연예인을 대상(주인공)으로 한 수위 높은 팬픽, BL(동성애)물들도 창작, 소비, 유통되지만 금지하지는 않는다. 아동모방 리얼돌은 실제 인물이 아니라 아동 일반이라는 추상적인 차원의 인격권을 말한다. 이런 경우 아동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 하는 선결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몸집이 작으면 아동리얼돌인가, 앳된 얼굴을 묘사하면 아동인가, 각각의 경우 규정이 모호하다. 아청법 논란 때와 같다. 광범위하고 모호하고 추상적인 금지다. 국가에게 권리 제한의 권한을 부여할 때는 엄격한 심사가 필요하다.

2) 리얼돌은 실제 여성에 대한 성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

포르노에 대한 오래된 주장과 논리 구조가 같다. 여성운동가들은 "포르노는 이론, 강간은 실천"이라고 얘기한다. 포르노를 통해서 여성에 대한 강간을 학습한 남성들이 실제 강간을 실천한다는 주장이지만 입증된 바가 없다. 이 논리대로라면 포르노를 합법화한 많은 나라들의 성범죄는 그렇지 않은 나라들에 비해 현저히 높아야 할 것이다. 이 논리는 리얼돌을 이용하는 남성들이 실제 여성과 리얼돌을 대상으로 한 자위행위를 구분하지 못한다는 인식에 근거한다. 남성을 비하하는 논리이기도 하다. 사람들은 범죄와 범죄 아닌 것을 구분하고, 실제 성행위와 자위행위를 구분한다.

규제 주장자들은 리얼돌과 성범죄의 인과관계는 입증되지 않았다 해도 상관관계는 존재한다고 한다. 만일 상관관계에 대한 통계적 근거가 있다면(물론 없지만) 다른 영역에서도 상관관계에 의한 금지원리를 일반론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자동차의 증가는

자동차 사고의 증가를 불러온다. 여성들의 경제진출은 여성들의 우울증 증가와 상관관계가 있다는 연구결과가 존재한다. 아이스크림 소비가 증가하면 자살률이 늘어난다는 데이터도 있다. 그러한 이유로 자동차와 여성의 경제활동과 아이스크림을 금지할 수 있는가? 포르노를 합법화한 후 강간범죄가 유의미하게 줄었다는 연구결과가 존재한다. 이 논리는 왜 받아들이지 않는가. 리얼돌과 실제 성행위 사이에 개연성이 있다는 논리를 주장한다면 개연성은 일방향으로만 진행되지 않는다는 논리도 수용해야 한다. 리얼돌을 이용한 후 만족스러워서 실제 여성에 대한 강간을 저지르지 않았다는 개연성도 수용할 것인가? ‘화장을 질게 하고 노출이 심한 여성이었다, 그러지 않았다면 강간하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강간범의 주장에서 화장과 노출을 한 사람의 책임은 기각하면서, 성적 도구의 경우에만 인과관계와 책임을 도출하는가. 일반원리는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원하는 결과를 위해 선택적으로 주장하는 논리는 합리성의 영역에서 수용될 수 없다.

3) 리얼돌은 여성에 대한 성상품화와 성적 도구화로 여성의 존엄성을 훼손한다?

성상품화가 문제라면 섹시한 남성의 몸을 드러내는 표현물이나, 남성 스타의 근육질 몸매 등 여러 표현물들이 같이 금지되어야 한다. 성상품화는 여성뿐 아니라 성적인 코드를 담은 모든 표현물에 해당하는 논리다. 무엇을, 어디까지를, 누가, 성상품화라 규정할 것인가? 성상품화는 왜 나쁜가? 개념의 명료화를 위한 노력도, 권리 논증도 없는 위험한 주장이다. 남성의 성기 모양을 한 자위도구도 금지할 것인가?

리얼돌이 왜곡된 여성상을 유포시킨다는 이유로 금지되어야 한다면, 신데렐라 콤플렉스 창작물들, 순정물은 금지되어야 할 것이고, 왜곡된 남성상을 유포한다는 이유로 영웅물이나 전쟁물도 금지되어야 할 것이다. 성기 중심으로 남성을 사고하게 한다는 이유로 남성 성기 모양의 dildo도 금지할 수 있다. 인간상을 왜곡한다는 이유로 표현물을 금지한다면 많은 표현물이 금지의 덩어리에 걸린다. 인간상의 왜곡은 모든 판타지물에 다 있는 일이고 사람들은 그 이유로 판타지를 소비한다.

여성을 성적 도구화 하기 때문에 리얼돌 이용은 문제라는 주장이 있다. 자위는 남녀불문 가장 내밀한 행위다. 누구의 권리도 침해하지 않으면서 성적 취향과 욕망을 만족시키는 행위로 성적자기결정권의 영역이다. 여성을 비하한다는 이유로 자위도구를 금지한다면 여성을 비하하지 않으면서 가능한 자위행위는 무엇인가. 자위행위는 여성을 성적 욕망의 대상으로 하고 이는 자연스러운 행위일 뿐 부당하다고 비난받을 일이 아니다. 성별을 불문하고 성적 욕망의 대상이 된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인간의 본질적인 욕망에 해당한다.

4) 리얼돌은 여성을 성적 대상화(sexual objectification)하여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한다?

많은 대상화들과 구분해서 성적 대상화만 금지되어야 한다면 마땅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우리는 성적으로 대상화한다는 이유로 즉각 해당 존재에 대한 비하나 왜곡, 인격적 침해를 하지는 않는다. 예를 들어 어떤 존재의 성적 아름다움을 거론한다고 해서 인격적 침해가 일어난 것은 아니다. 이는 대상화라는 용어의 개념을 오남용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다. 대상화는 기능적인 특수성을 부각하거나 활용하는 방식과 태도이다. 인간의 신체를 표현하는 방식은 다양하다. 화장품 광고에 등장하는 입술, 운동기구 홍보를 위한 탄탄한 가슴팍, 머리칼, 얼굴 등등, 필요에 따라 신체의 특수한 부위에 초점을 맞춘 행위가 있다 해서 인간을 비인간화시키는 것은 아니다. 이를 비인간화라 부르지 않는다. 표현물들은 각각의 표현영역을 가지며, 그 표현이 전인격적인 모든 요소를 다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 이는 표현물의 목적과 한계에도 맞지 않는다. 운동기구를 홍보하는데 등장한 근육질의 모델에 열광하는 것은 전인격적인 인간으로서가 아니라 운동으로 신체를 잘 관리하는 기능성에 초점을 둔 부분적 판타지이다.

포르노나 리얼돌도 마찬가지다. 성적 도구는 필요를 충족시켜주는 표현물일 뿐 견해를 확인하거나 창출하지 않는다. 성적 욕구는 필요의 영역이지 태도가 아니다. 존재하지 않는 견해를 억지로 도출해서 비난하고 표현물을 없애자고 주장하는 것은 타인의 필요를 억압하고 경시하는 태도이다. 이 태도가 성적 대상화 개념을 오남용한다. 규제를 주장하는 자들은 자신이 반대하고자 하는 사안에서 다른 사람들을 수단으로 대우하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한 후, 대상화(objectification)라는 이름을 붙인다. 수단으로 대우하는 측면만 있으면 대상화라는 이름을 붙이고 바로 금지 대상으로 간주한다. 성적 대상화라는 딱지를 붙임으로써 즉각 경멸스럽고 비인간적인 것으로 매도한다.

사회생활을 하는 인간은 상호수단적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 헬스강사는 나의 신체기능을 향상시키는 수단이고 나는 헬스강사의 생계를 위한 수단이다. 교수와 학생, 부모와 자식, 상인과 소비자 등, 모든 인간관계에는 상호 수단적인 측면이 있으며 여기에서 수단이란 '나의 욕구와 행복과 이익을 위해 이용하는'이란 의미이다. 그런데 대상화의 개념을 남용하면 무엇이든 나쁘게 부를 수 있다. 리얼돌이라는 도구 이용은 성적 대상화이며 이 대상화 때문에 여성이 인간 이하의 존재로 격하된다는 주장은 왜곡된 존엄성 개념 이미지에 의한 주장일 뿐, 이 사안에서 사실상 객체화¹⁾는 아무런

1) 성적 대상화에서 금지를 도출하는 것은 대상화(objectification)가 아니라 성(sexual)에 있다. 리얼돌에서 성적 대상화라는 용어는 동의능력, 행위능력, 자기결정능력이 있는 주체를 다룬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원래 금지가 가지고 있는 맥락을 보다 정확하게 전달하는 데에는 대상화보다 객체화라는 용어가 적절하다.

작용을 하지 않는다.

기능적인 특수성을 부각해서 활용하는 다른 활동들은 문제 삼지 않으면서 성적인 것을 표현하면 ‘대상화’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자체가 차별적 용어 사용이다. 이러한 차별적 용어 사용은 섹스 자체가 비인간적이라고 생각하는 반육체적, 청교도적인 성 혐오주의에 근거한다.

4. 금지를 금지하라

대법원의 판결 후 리얼돌 규제 청원이 20만 명을 넘었다. 한국은 유교 바탕의 문화적 규범과, 해방 후 들어온 기독교의 청교도적인 문화 규범이 한 번도 도전받지 않아왔다. 성적 자유의 물결은 잠시 불었다 사라졌다. 성적인 것을 죄악시하고 비천하게 보는 금기의 감정(파토스) 위에, 여성을 가부장적 사회에서 성적 착취 피해자로 규정하는 페미니즘이 만나게 된다. 유교, 기독교, 페미니즘이라는 세 영역의 금기가 연합해 성윤리의 기풍으로 자리 잡았다. 셋 중 어느 하나만 받아들여도 성적 규제에서는 같은 결론을 지지하고 실천하게 되므로 막강한 힘을 발휘한다. 리얼돌 규제 주장이 힘을 받는 데는 한국사회의 이러한 특수성이 작용한다.

지금 한국 사회는 성적 즐거움을 죄악시하는 문화를 넘어 법규에 의한 범죄화로 가고 있다. 특히 성적 영역은 2010년 이후 법규적 범죄화 속도가 빨라지는 중이다. 성적 엄숙주의와 범죄화는 끊임없이 강화로만 갈 뿐 풀린 적이 없다. 만인이 만인을 죄면서 결국 인간을 힘들게 하고 중대한 가치와 멀어지는 중이다.

기본권은 단순하게 사변적인 자유연상으로 제한할 수 없다. ‘리얼돌은 성적 대상화다-이는 여성의 몸을 착취하는 것이다-인간 존엄성을 해치므로 규제가 마땅하다’와 같이 자유연상을 고리화한다면 금지 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안은 없다. 이 자유연상 과정에는 아무런 권리 논증이 없다.

리얼돌 규제 주장은 법체계의 정확성에도 어긋난다. 욕망에 대한 충족을 현실화한다는 것은 판타지의 소비자가 책임 없는 주체라는 전제다. 현실에서 처벌을 받는 부분은 ‘행위’다. 하드코어 살인물을 본 후 충동적으로 살인을 저질렀다고 주장하는 범죄자의 경우, 그 표현물을 봤다고 해서 살인행위를 면책해주지 않는다. 우리 법률은 문화물을 봤을 때 통상적인 방식으로 소비하는 이성적인 행위자를 전제로 한다. 이성적 행위자가 아니라고 판단할 때 면책이 되어 책임조각사유가 된다. 한 사람이 범죄를 저지른 데에 표현물이 영향을 끼쳤다고 해서 규제한다면,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무수한 사람들의 행복추구권을 제한하는 행위다. 그런 작위는 신뢰할 수 없다. 또한

범죄자는 행위의 책임을 외부에 떠넘기려는 속성을 갖는다. 도덕적 책임에서 벗어나고 사회에 널리 퍼진 속설에 부응해 면책을 받기 위함이다. 모든 사건은 원인과 결과가 있다. 성경을 읽고 심판을 위해 연쇄살인을 했다 해서 성경 탓이라 할 수는 없다. 원인은 성경을 잘못 읽고 행위로 나아간 것에 있지, 읽은 것 자체나 성경출판자의 잘못은 아니다. 인과성의 사슬에서 어떤 사람의 주체적인 결정-심판을 위해 살인을 결심한 한 살인자의 결정-이 개입하는 순간, 이를 규범적인 인과관계로는 수용할 수 없는 것이 법원리의 중대한 원칙이다.

권리의 단위는 개인이며 리얼돌 규제는 중요한 기본권인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우려가 크다. 타인의 권리를 직접적으로 침해하지 않는 한, 모든 개인은 성적취향의 자유를 누릴 수 있다. 일부 범죄 가능성의 예를 들어 규제를 지지하는 것은 부당한 국가권력의 남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 우리 헌법 제17조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고 했다. 대법원의 판결문에서처럼 '개인의 사적이고 은밀한 영역에 대해서 국가의 간섭은 최소화되어야 한다.'

또한 리얼돌 규제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성적자기결정권을 행사할 권리에 더불어, 타인의 성적자기결정권을 행사하는 지배권까지 갖게 된다. 다른 구성원들은 자신의 성적자기결정권이 타인에 의해 지배당하는 권리의 훼손을 경험한다. 이는 사회 구성원들 사이에 권리행사의 불평등을 일으키는 문제다. 모든 국민은 자유를 가진 인격적 존재로서 평등하다.

가치와 규범의 혼동은 리얼돌 규제 주장의 중요한 원인이다. 규범은 어떤 행위를 모든 사회구성원이 동등하게, 예외 없이 이행해야 할 책무를 부여하는 것이고, 가치는 상호주관적으로 공유되는 선호다. 규범은 타당하거나 타당하지 않거나 이지만, 가치는 주관적인 편향음 혹은 나쁨, 매력적임과 같은 주관적 판단요소를 포함한다. '여성이 인격적으로 존엄하게 대우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는 리얼돌 규제 주장은, '인격' '존엄' '침해' '권리' 같은 개념을 주관적인 판단의 해석자들이 좌우할 수 있는 위험성을 가지므로 규범의 근거로는 적용할 수 없다. 자신의 정치적, 종교적, 문화적 신조에 따른 규범을 모든 사람이 마땅히 해야 할 행위라고 주장하면서 타인의 자유를 제약하고 자신의 신념을 불공정하게 주입시키는 것은 인간 스스로의 궁극적 자율성을 무시하는 행위다.

우리 헌법 제37조 1항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고 하였고, 37조 2항은 '모든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국가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지금 성적 영역에서 규제를 주장하는 이들은 헌법에 보장된 자유의 견해를 바꾸는 전략을 사용한다. 이전에는 안전, 전통 가치, 덕과 같은 가치(value)들이 자유를 공격하는 추세였다면, 요즘은 자유 자체의 개념을 변형한다. 이는 세계적인 추세이기도 하다. 진보 매체들은 리얼돌 논란에서 이를 혐오하는 여성들의 입장을 대변하며 인간 존엄 개념을 내세우고, 규제하는 국가들의 사례만 부각한다. 리얼돌이 여성의 지위를 위협한다고 주장한다. 여성의 지위는 포르노물의 금지, 성적 표현물이나 도구의 금지가 아니라, 한 사회의 문명화, 근대화, 법치주의와 시민의식의 성숙으로 결정된다.

리얼돌이 누구의 권리를 침해하는가, 권리의 단위를 아동, 여성과 같은 집단정체성으로 적용할 수 있는가, 사적 영역에 대한 국가의 개입을 어디까지 용인할 것인가, 인간의 가장 본질적인 욕망과 상상을 범죄화하고 금지하는 일은 온당한가, 더 많은 자유를 외치며 국가의 억압에 대항해 왔던 진보는 어디에 서 있는가. 리얼돌 규제 사태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은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훼손하지 않고 시민들 사이의 동등한 지위를 보장하는 공정성이다. 우리는 점점 자유의 감각을 잃어버리고 있다.